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 례 안
(16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조례명	쪽수
2023-127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023-128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교육과)	5
2023-129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소통과)	11
2023-130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17
2023-13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21
2023-132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복나눔과)	27
2023-133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	31
2023-134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행복나눔과)	35
2023-135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정책과)	45
2023-136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	49
2023-137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	55
2023-138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과)	59
2023-139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건설교통과)	65
2023-140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건축과)	69
2023-141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사업소)	71
2023-14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사업소)	75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2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국제·지방세 수입 저조 등 어려운 세입 여건과 재난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확대함(안 제4조)

1)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 ⇒ 90퍼센트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9.~10.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50퍼센트”를 “9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p> <p>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이하 “재정안정화 계정”이라 한다)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의 세입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해당 금액의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채무부담 사업비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p>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항 제5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p> <p>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이하 “재정안정화 계정”이라 한다)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의 세입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해당 금액의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채무부담 사업비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p>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항 제5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2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등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위임사항을 정함을 명시함(안 제1조)
- 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기능 및 대행을 신설함(안 제7조)
- 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신설함(안 제8조)
- 라.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이전 시 지원범위를 신설함(안 제9조)
- 마.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를 신설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제15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7. 28.~8.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 활용범위 확대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

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 강화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제9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제10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7조에 따른 거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의 심의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7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u> <u>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u> <u>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 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 활용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u>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청년기본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청년정책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신 설>

제8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신 설>

제9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신 설>

제10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
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
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2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나. 법령 위임범위에서 위원회의 위원 수 등을 정비함(안 제3조·제6조·제10조)
 - 1) 위원 수: 7명 이내 ⇒ 10명 이내
 - 2)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지명업무 담당과장
 - 3) 신설: 서면심의, 수당
- 다. 법령 중복·재기재사항 삭제함(현행 제10조·제11조)
 - 1) 보고, 현장조사 등
 - 2)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9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9. 5.~9. 2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1조”를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로 한다.

제3조·제6조·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서면심의를 포함한다)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3조(구성)</u>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소통과장, 도시건축과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상급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p>	<p><u>제3조(지명위원회의 구성)</u>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p> <p>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p>
<p><u>제6조(회의)</u>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u>제6조(회의 및 서면심의)</u>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p>

제10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의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서면심의를 포함한다)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23-13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한국승강기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등록금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인 거창군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21.~10.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업무를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학회가 등록금 지원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금 지원 신청 및 선발방법 등의 지원절차는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업무를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장학회가 등록금 지원 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금 지원신청 및 선발방법 등의 지원절차는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u></p>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3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효도권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효도권 지원사업자에 대한 비용의 지급방법 변경함(안 제7조의2)
- 나. 효도권 지원사업의 위탁근거 신설함(안 제7조의2)
- 다.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을 인상함(안 제10조)
 - 1) 현행: 월 10만원
 - 2) 변경: 월 15만원
- 라.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의2제4항·제15조)
- 마. 별지 서식을 삭제함(안 제11조·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191백만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9. 15.~10.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군수는 효도권 지원사업자에게 효도권 이용자가 이용한 비용을 매월 지급한다.
- ④ 군수는 효도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나목 중 “월 10만원”을 “월 15만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를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으로 한다.

제13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지급대장”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2(효도권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로서 85세 이상인 사람(이하 “효도권 이용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목욕 및 이용·미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효도권 이용자는 군과 협약한 목욕업소 및 이용·미용업소(이하 “효도권 지원사업자”라 한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u>효도권 지원사업자는 효도권 이용자가 그달 이용한 효도권 이용명부를 근거로 효도권 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u></p> <p>④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효도권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효도권 이용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u> 2. <u>효도권 이용명부의 허위작성</u> 3. <u>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권을 이용하거나 효도권 비용을 지원 신청한 경우</u> <p>▷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수</p> <p>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예수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나.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u>월 10만원</u> 다.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 2. 사망위로금: 50만원 	<p>제7조의2(효도권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로서 85세 이상인 사람(이하 “효도권 이용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목욕 및 이용·미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효도권 이용자는 군과 협약한 목욕업소 및 이용·미용업소(이하 “효도권 지원사업자”라 한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u>군수는 효도권 지원사업자에게 효도권 이용자가 이용한 비용을 매월 지급한다.</u></p> <p>④ <u>군수는 효도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예수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나.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u>월 15만원</u> 다.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 2. 사망위로금: 50만원

현행	개정안
<p>제11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u>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u> 관련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3조(지급대장 관리) 군수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u>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장에</u>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5조(명예수당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p>제11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u>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u> 관련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지급대장 관리) 군수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u>지급대장에</u>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삭제></p>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국가유공자 효도권 지원
- 2)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지급

나. 관련 조문: 안 제7조의2, 제10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계	168	192	192	192	192	936
군비	157.8	181.8	181.8	181.8	181.8	885
도비	10.2	10.2	10.2	10.2	10.2	51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효도권 지원: $7,000\text{원} \times 600\text{명} \times 3\text{매} \times 12\text{월} = 151.2\text{백만원}$

나.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200,000\text{원} \times 17\text{명} \times 12\text{월} = 40.8\text{백만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13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군에서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거나 장례진행 후에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공영장례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공영장례 대상, 지원내용을 정함(안 제3조·제4조)

1) 대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2) 내용: 현금지급 원칙, 물품 예외지급, 매장비용은 제외

라. 공영장례 신청, 물품환수, 위탁을 정함(안 제5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9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9.~10.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3조에 따른 대상 시신에 대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거나 장례진행 후에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영장례 대상)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에 대해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공영장례(군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장례비용 지원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영장례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공영장례를 신청하려는 군민 또는 군 소재 법인은 공영장례 신청서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공영장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물품환수)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품으로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받은 물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공영장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3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회비 제도를 폐지하여 장난감은행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아이키우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거창군 출산장려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회비 폐지 관련 삭제함(안 제8조·제9조)

- 1) 연회비 납부 및 반환
- 2) 연회비 면제

나. 법령 재기재 삭제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아동복지법」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5.~10.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제9조,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u>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삭제></u>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134	제 출 자	거창군수
----------	----------	-------	------

1. 제안이유

거창군의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기본계획, 사업, 아동권리 실태조사, 재정지원 등을 정함(안 제5조~제9조)
-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8조)
- 라. 아동권리 대변인 설치·기능 등을 정함(안 제19조~제23조)
- 마. 아동동영향평가 실시, 실시 제외를 정함(안 제24조·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4조

나. 예산조치: 2026년부터 예산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7. 27.~8.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8조)
- 5)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을 아동친화도시로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1. 아동은 해당 아동 또는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등에 무관하게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교육, 의료, 문화 및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4.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및 사법절차에서 아동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존중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아동을 포함한 군민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아동 의견 반영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3.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사업
 - 나.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사업
 - 다.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
4.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사업
5.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등 조성) 군수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
2. 아동의 놀이 및 휴식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유기적 연계

제8조(아동권리 실태조사 실시)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내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조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제6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아동권리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및 그 제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아동 분야의 전문가

다. 아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라. 군민인 아동의 부모 또는 모

마.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아동권리 대변인의 설치)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아동권리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제20조(아동권리 대변인의 기능) 아동권리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 권리에 관한 정책, 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
3. 아동 권리 침해 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시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촉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아동권리 대변인을 위촉할 수 있다.

1. 아동 권리 분야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아동권리 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대변인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아동권리 대변인의 해촉) 군수는 아동권리 대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 대변인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권리 대변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권리 대변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24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수립하는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군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5조(아동영향평가 실시 제외) 군수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 및 단순 업무처리절차 등 조직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군수가 해당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사업 시행 등
- 나. 관련조문: 재정지원(안 제9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출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합계
군비	50	10	10	10	50	130

3. 향후 계획

-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사업 추진을 위한 2026년 본예산 편성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2026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2. 2027년~202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사업 추진 등 30백만원
- 3. 2030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연구용역 및 기반사업 추진 50백만원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신 동 범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13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에 대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정함(안 제2조)

나. 예방접종 비용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3조)

-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군민으로서 예방접종 금기자가 아니면서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등

다. 지원신청을 정함(안 제4조)

라.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5조)

마.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를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735,600천원 확보예정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1.~10. 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거창군민
2. 예방접종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이나 제5조에 따른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보건기관 등은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5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군수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

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65세 이상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나. 관련조문: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군비	735,600	772,380	810,990	851,539	894,115

3. 관련의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에 대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지원대상: 65세 이상 군민

나. 사업비: 735,600천원

1) 백신구입비: 731,600천원(100,000x7,316명)

2) 이상반응 지원비: 4,000천원

작성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3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와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안전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근거 등 정비(안 제2조)

나. 위원회 비상설화함(안 제3조제5항)

다.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정비

- 1) 변경: 회의안건 부치는 권한 및 회의소집 권한(안 제2조·제7조)
- 2) 삭제: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 임기(현행 제4조·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 2)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8. 16.~9.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조 제목 “(기능)”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개의회”를 “개의회(開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기능)</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u>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u> 회의에 부치는 사항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군수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 	<p>제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p> <p>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u>군수가</u> 회의에 부치는 사항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군수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

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 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삭 제>

<삭 제>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u>군수가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開議)</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	---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3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구호 및 복구비 등을 지원한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거창군이 부담한 구호 및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원인제공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책임을 정함(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8.~10.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책임)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군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책임)</p> <p>① <u>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군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u></p>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3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공영주차장 내의 장기불법주차, 주차구역에서 상행위·야영 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령 범위에서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 거부금지 예외사유 확대함(안 제4조)

- 1)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 3) 취사·음주·흡연, 폐기물 투기를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무단 장기주차하는 경우
- 5) 주차요금을 3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등

나.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사항 변경 등 정비(안 제2조의2·제2조의3·제15조·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주차장법」 제8조·제8조의2·제10조·제13조·제15조·제17조
- 2)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9. 15.~10.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제1조의2제3항”을 “제1조의2제3항제1호”로 한다.

제2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임산부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한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차 거부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공영주차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나. 취사·음주·흡연, 폐기물 투기를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무단 장기주차하는 경우
5. 주차요금을 3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공영주차장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필요시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조치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을 “영 제1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② (생략)</p> <p>제2조의3(임산부 전용주차구역)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이하 “임산부”라 한다)이 운전할 경우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한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생략)</p> <p>제4조(주차 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u>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p>	<p>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3(임산부 전용주차구역)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이하 “임산부”라 한다)이 운전할 경우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임산부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한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주차 거부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정당한 사유없이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u>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공영주차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나. 취사음주흡연, 폐기물 투기를 하</p>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2.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2.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무단 장기주차하는 경우

5. 주차요금을 3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조치할 수 있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③ (생략)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는 영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납부일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②~④ (생략)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는 영 제17조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납부일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3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비용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령 불부합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별표)

1)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의 산정기준

나. 「도로교통법령」 재기재 또는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조항 삭제함
(현행 제2조·제4조·제5조)

1) 차량의 견인: 법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2)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3) 대행비용의 지급: 법 제35조제6항, 시행령 제15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5.~10.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보관 비용) ① 거창군수는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견인·보관 비용(제2조 관련)

1. 견인비용

대상차량	견인료
	기본요금(편도 10킬로미터 까지)
2.5톤미만	72,200원
2.5톤이상~4톤미만	100,300원
4톤이상~8톤이상	128,000원
8.0톤이상~12톤이상	154,400원
12톤이상	174,500원

2. 보관비용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23-14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2005. 2. 25.)하였으나, 법령 개정(2014. 1. 17.)으로 군수가 고시할 수 있는 공장건축 가능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20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5.~10.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4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 2022.6.16.)되어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제정된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지정스포츠 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창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정스포츠클럽 지원을 신설함(안 제8조·별표)
- 나. 지정스포츠클럽 우선 수의계약 등 신설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스포츠클럽법」 제13조·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2) 「지방자치법」 제28조

다. 예산조치: 2023년 예산 145,000천원 확보

라.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마.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7. 14~8. 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 지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지정스포츠클럽 우선 수의계약 등) ① 군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별표 지원분야란 중 장애인활동 지원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경비 지원대상 사업(제8조제2항 관련)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
지정스포츠클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 수준별·종목별 지정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2.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3.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5.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 8. 전문체육 활동 지원 9.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③ 제2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2.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3.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5.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 8. 전문체육 활동 지원 9.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10.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 지원 <p>③ 제2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p> <p>제16조(지정스포츠클럽 우선 수의계약 등) ① 군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p>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지정스포츠클럽 지원: 운영비, 수준별·종목별 지정스포츠 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나. 관련 조문: 안 제8조·별표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세출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군비	145,000	145,000	145,000	145,000	145,000	725,000

3. 관련 의견: 지정스포츠클럽의 예산 지원으로 군민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군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지정스포츠클럽 1곳
2. 2023년 운영비 = 145,000원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4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2022. 6. 16.) 되면서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여 군의 스포츠클럽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함(안 제15조)

1) 근거: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가) 지정스포츠클럽: 100분의 80

나)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100분의 5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스포츠클럽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3.~5. 2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스포츠클럽: 100분의 8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100분의 5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5조(사용료 감경)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5조(사용료 감경)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정스포츠클럽: 100분의 80</p> <p>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100분의 50</p> <p>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p>